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8. 10 선고 2019가단231280(본소), 2020가단21261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민혜영, 김동일

피고(반소원고) 1. 망 B의 소송수계인 C

피 고 2. 망 D의 유언집행자 E

피고(반소원고) 3. 망 D의 유언집행자 F

4. 망 D의 유언집행자 G

피고 1,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일

담당변호사 이상은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7.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5,704,066/367,040,660 지분에 관하여 2020. 5. 11.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33,704,066/367,040,66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2019. 7. 7.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로는 원고와 피고 E, F, G와 망 B가 있다. 한편, 망 B가 2020. 9. 9.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 C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원고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느단200706호로 유언증서의 검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13. 실시된 유언검인기일에서 망인 명의의 2016. 4. 3.자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의 원본을 조사하였다.

다. 검인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유언장은 '유언장'이라는 제목 아래 망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유언의 작성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 명의의 인영 및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경기도 하남시 H 집을(토지, 건물) 막내 원고 I생에게 증여하고 이 유증은 나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라. 원고는 위 검인절차에서 이 사건 유언장의 보관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2016. 4. 3.에 작성한 것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보관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망 B는 '이 사건 유언장 작성시 망인은 치매에 걸려 있던 상태였고, 강요에 의하여 유언장이 작성된 것 같다.', 피고 F은 '이 사건 유언장의 작성일자 부분이 나중에 쓰여진 것 같다.', 피고 G은 '평소에 망인은 자식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는 말을 하였고,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66조 제1항),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서한서에 대한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에 그 전문과 작성일자, 망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유언증서에서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위탁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인 원고가 다른 유언집행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집행자인 피고 E, F, G 및 망 B의 소송승계인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9. 7. 7.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F, G(이하 '위 피고들'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장의 작성 당시 망인이 치매에 걸려 유언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 작성 이후인 2017. 1. 9.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의 병명으로 요양급여를 받기 시작하여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병명으로 요양급여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참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점(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참조), ②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고,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 치매의 증상은 치매의 종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치매라고 하여 곧바로 유언자의 유언능력을 부인하거나 치매기간 동안의 모든 법률관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유언 당시 유언자의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고려 인자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한 2016. 4. 3.로부터 9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치매 검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유언장 작성 이전에 치매 확진을 위한 검사를 받았거나 치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의 상태와 의사표현능력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망인은 당시 이 사건 유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 사건 유언증서 작성에 따른 효과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유언 이후 3년 이상 지나 사망하였는데, 가사, 망인이 이 사건 유언 당시 치매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치매의 일반적인 증상을 고려할 때 망인이 그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줄곧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망인이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유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유언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피고들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망인의 유증으로 인하여 위 피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수유자인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피고 E, F, G 및 망 B가 망인의 직계비속이고, 피고 C이 망 B의 상속인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1112조 제1호에 따른 유류분권을 가진다.

다. 유류분반환의 범위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 및 제3자에 대한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유류분 부족액의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및 제3자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이하에서는 앞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13, 20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K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쌍방의 주장에 대한 검토 및 다음 산정방식에 따른 각 계산 결과를 본다. 특별히 판단하지 않은 것은 배척된 주장이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가)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나) 적극적 상속재산

유증의 효력발생시기는 상속개시시점인 망인의 사망시이고(민법 제1073조 제1항, 제997조),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증여와는 달리 유증에 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유증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유증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가 주식회사 L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를 모은 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 등을 부담하였음을 이유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3 지분을 반환한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2019. 7. 7.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은 367,040,660원이다.

(2)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 유증 대상인 부동산 중 대항력을 가진 임대차가 존재하는 때에는, 임대차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임대인 지위가 부동산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되고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5794 판결 등 참조),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통상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받는 것이 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유증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한다는 것이 유증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부담 있는 유증도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의 가액 중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이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실제 유증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 ①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 ② M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 ③ N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 ④ 원고는,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1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4. 10. 3.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층 독채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85년경부터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거주해왔던 점, 망인은 2014. 10. 29.경 원고에게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층 소유의 120,000,000원(지분 1/4)을 주기로 함’이라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해주었는바, 망인의 위 유언의 일환으로 위 2014. 10. 3.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와 망인 사이에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140,000,000원(= ① + ② + ③)은 원고가 유증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실제 수증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위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속채무에서 제외한다).

(3) 소결

결국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유증받은 재산의 실질적 가액은 227,040,660원(= 유증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367,040,66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40,000,000원)이 된다.

다) 생전 증여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피고 G에게 15,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16. 5. 13. 19,000,000원, 2017. 3. 30. 16,000,000원 합계 35,000,000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합계 3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망인의 O에 대한 35,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대신 변제해주자,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피고들은, M 및 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액 24,500,000원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25,000,000원 상당을 지출하자 망인이 이를 반환하는 취지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상속채무액

K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00,000원

마) 소결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197,040,660원(= 적극적 상속재산 227,040,660원 - 상속채무 30,000,000원)이다.

3)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A×B)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원고, 피고 E, F, G, 망 B가 있으므로, 이들의 각 유류분율은 1/10(= 법정상속분 1/5 × 유류분비율 1/2)이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각 유류분액은 19,704,066원(= 197,040,660원 × 1/10)이다.

4) 특별수익액(C)

가) 원고의 특별수익액은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액인 227,040,660원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 내지 적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3 지분은 가정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원고의 헌신,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울인 원고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및 청산 등의 이유로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입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의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출원리금 4,967,354원을 원고가 납입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유증액 또는 원고의 특별수익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비용으로 이를 납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부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부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유증액 내지 특별수익액에서 공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피고들의 특별수익액은 없다.

5) 순상속분액(D)

상속개시 당시 망인은 유증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이 없고, 상속채무 30,000,000원만이 존재하는바, 위 상속채무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1/5)에 따라 부담하므로, 상속인들의 순상속분액은 각 -6,000,000원이다.

6)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A×B-C-D)

공동상속인	유류분액(A×B)	특별수익액(C)	순상속분액(D)	유류분 부족 또는 초과액(A×B-C-D)
원고	19,704,066	227,040,000	-6,000,000	-201,335,934
피고 E	19,704,066		-6,000,000	25,704,066

피고 F	19,704,066		-6,000,000	25,704,066
피고 G	19,704,066		-6,000,000	25,704,066
망 B	19,704,066		-6,000,000	25,704,066

라. 유류분 반환방법 및 소결론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피고들은 원고의 유증재산에 관하여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고, 달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피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물반환을 명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는 유류분권리자인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5,704,066/367,040,660 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0. 5. 11.2)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정민

별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근거로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경우 그가 피상속인과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되면 공평의 원칙상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인 원고가 유증을 받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는 침해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원고는 상속개시일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위 피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비로소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 ‘유류분반환’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